

울산지방법원 2020. 2. 6 자 2019재나263 결정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울산지방법원 2020. 2. 6 자 2019재나263 결정

울산지방법원 2015. 5. 13 선고 2014나4859 판결

울산지방법원 2014. 6. 17 선고 2013가소43706 판결

전문

원고(재심원고), 항소인

A

피고(재심피고), 피항소인

B 주식회사

변론 종결 2019. 11. 28

판결선 고 2020. 2. 6

제1심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. 6. 17. 선고 2013가소43706 판결

재심대상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. 5. 13. 선고 2014나4859 판결

주문

1.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.

2. 재심소송비용은 원고(재심원고)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, 항 소 취 지 및 재 심 청 구 취 지

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.

피고(재심피고, 이하 '피고'라고만 한다)는 원고(재심원고, 이하 '원고'라고만 한다)에게 2,231,0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. 3.6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(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,재심 전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피고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하였다)

이 유

1. 재심대상판결의 확정

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.

가. 원고는 2013. 10. 30. 피고를 상대로,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가보조금 미지급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, 울산지방법원 2013가소43706호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 는 소를 제기하였다.

그러나 위 법원은 2014. 6. 17. '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'는 판결 을 선고하였다.

나.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나4859호로 항소하는 한편,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부분의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피고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대 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추가하였다.

그러나 위 법원은 2015. 5. 13. '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'는 판결을 선고하였고(이하 '재심대상판결'이라 고 한다), 위 판결은 2015. 6. 4. 그대로 확정되었다,

2.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

가.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의 요지 재심대상판결 확정 이후 원고는 울산광역시시장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2019. 1.28. 울산광역시시장으로부터 '2012년 피고 소속 총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월별 지급내역(카드협약사 지급내역)(이하 '이 사건 지급내역'이라 한다)'을 공개받았다. 그런데 이 사건 지급내역은 재심대상판결에서 인정하였던 울산광역시의 피고에 대한 유가 보조금 지급내역과 상이하다.

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인 '판결의 기 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,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 에 따라 바뀔 때'에 해당한다.

나. 판단

1) 관련 법리

재심의 소가 적법한 법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 하여 제기된 경우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(대법원 1996. 10. 25. 선고 96다31307판결 등 참조).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"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,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뀔 때" 라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 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 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,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 고 하는 것은 그 재판 등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재판 등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(대법원 1994. 11. 25. 선고 94다33897판결 등 참조).

2) 판단

원고는 자신이 울산광역시시장으로부터 공개처분을 받은 이 사건 지급내역과 재 심대상판결에서 인정한 울산광역시의 피고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이 서로 다르므 로 다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 도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 처분에 따라 바뀔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민사소송법

제48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
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.

3*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,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재판장 판사 강경숙판사 이필복판사 목명균